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합892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수현, 장지웅

피 고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선하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8. 시행위탁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외 5개 회사(이하 '위탁자들'이라 하고, C은 위탁자들을 대표한 회사이다)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D 대 67,389.1㎡를 신탁받아 그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위탁자들은 같은 날 위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E은 C 및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위탁자들은 신탁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위탁자들에게 지급되거나 그 환급금 채권이 위탁자들에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토지신탁사업약정 제4조 제1항 제1호 9)목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원고 명의 자금관리계좌로의 입금을 위탁자들의 업무로 규정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 제39조 제2항에서 "위탁자들은 원고에게 사업자(위탁자들)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괄적으로 양도함과 아울러 그 양도에 대한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8. 8. 6.부터 2019. 1. 21.까지 여러차례 C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고, 2019. 1. 21.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양도 요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목포세무서에서 2019. 2. 22. 위 신탁사업 관련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1,764,592,170원을 C 명의 계좌로 이체하자 E은 그중 10억 원을 2019. 3. 4.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19. 4. 22. E의 처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거쳐 2019. 6. 7.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순차로 이체한 후 2019. 7. 4. 위 10억 원을 그대로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라. E은 위 다.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다.항의 10억 원을 포함하여

2018년 1기분과 2기분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원고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했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20. 11. 5.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20고합8),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2023. 11.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2020노407). 위 사건의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2023도1689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C의 대표이사 E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1,764,592,170원 중 10억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는 E이 위 금원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E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받아 E의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는 2019. 3. 4. C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E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의 계약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567조,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의 주장대로 C이 2019. 3. 4. 피고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는 원고의 C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1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C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것이고, 그에 따라 C에 1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만 있는바, 원고는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에 대한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금전을 변제받으면 될 뿐이다. 2) 설령 E이 C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10억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의 대표이사 E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법인 명의 통장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C의 대표이사 E과 공모하였다거나 E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으로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E의 이러한 행위를 피고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3)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E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사실을 안 날, 즉 E이 2019. 3. 4. 피고 명의 계좌로 10억 원을 이체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2022. 3. 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그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동불법행위책임

C의 대표이사 E은 자신이 피고 회사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C 계좌로 입금되자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 계좌로 입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민법 제34조), 법인의 행위는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된다. 그러나 법인의 이러한 권리능력범위를 벗어난 대표기관의 행위는 대표기관 개인의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그 법률효과는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피고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E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민법 제35조, 상법 제210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대표자인 E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해 본다.

2) 상법 제567조, 제210조의 책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하며,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상법 제567조는 상법 제210조(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하므로, 이러한 법리는 유한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유한회사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는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데, C과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E이 C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 계좌로 이체한 행위만으로는 E이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와 관련해 피고가 C에게서 1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10억 원의 차용은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인데 피고의 대표이사 E이 '피고와 C 사이에 가공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그러한 소비대차계약은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10억 원이 이체된 것만으로는 차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가 10억 원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E은 위 10억 원을 피고 계좌로 이체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유죄판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E은 형사재판에서 위 10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와 위탁자들은 토지신탁 사업약정 제4조 제1항 제1호 9)목과 이 사건 신탁계약 제39조 제2항 등을 통해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를 지출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반환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합의에 따라 원고는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신탁재산에서 지출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경우 그대로 신탁재산으로 환원시켜 신탁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의에 불구하고 C의

대표이사인 E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임의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E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E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C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상법 제210조는 회사가 대표사와 연대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회사와 거래한 제3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은 E의 횡령에 의해 10억 원이 C에서 피고에게로 이체된 것일 뿐 대표기관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임을 믿고 거래하여 보호받을 제3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기관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에 관하여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2019. 3. 4. 10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반환을 구하나, 앞서 본 것처럼 위 10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용무, 판사 홍자경, 판사 김아름